

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289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민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각 2021. 11.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064,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4,840원 및 그 중 1,491,41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16. 1. 15. E에게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4.9%, 변제기 2019. 1. 15.로 하여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16. 8. 15. G 유한회사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9. 9.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다. E는 2020. 9. 10.까지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 E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차용금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가, E의 미납으로 인하여 2021. 12. 17. 실효되었다.

라. G 유한회사는 2022. 11. 29.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채권(원금 1,491,419원 및 지연 이자 등)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2. 12. 23.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24. 4. 25. E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211494 양수금 사건에서 “E는 원고에게 7,061,988원 및 그 중 1,491,419원에 대하여 202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5. 17. 확정되었다.

바. E의 아버지 H은 2021. 11.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E, 피고 I이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상속분은 피고 C 3/7, E와 피고 D 각 2/7이다).

사. E는 2021. 11. 20. 피고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고, 2021. 12. 24. 피고 C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2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그 가액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을 훨씬 초과한다)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다.

자. 2023. 11. 13.경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7,064,840원이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단법인 J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전문 대부업체인 G 유한회사 및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2021. 11. 20.부터 1년 후인 2022. 11. 29. 위 채권을 양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사해행위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 1) 원고의 위 양수금 판결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피고들은, E에 대한 각 채권양도통지가 현실적으로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송달보다 더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이 정한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1751 판결 등 참조),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E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양수금채권은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들은 또한, 상사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위 채권의 원래 변제기는 2019. 1. 15.이었고, E가 그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E는 2020. 9. 10.까지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고, 그때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E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다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이 사건 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조합이 사해행위 후인 2023. 4. 4.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3.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당시 피보전채권액인 7,064,840원이 된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064,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4,84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원금 1,491,41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별지